

|       |              |       |                        |
|-------|--------------|-------|------------------------|
| 보도 일시 | 배포 즉시 보도     | 배포 일시 | 2023. 1. 18.(수)        |
| 담당 부서 | 법무실<br>법조인력과 | 책임자   | 과 장 이준호 (02-2110-3244) |
|       |              | 담당자   | 서기관 유경남 (02-2110-3811) |

##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시행 결과 및 합격자 결정기준 발표

○ 법무부는 2023. 1. 10.(화) ~ 14.(토), 5일간(휴식일 포함) 제12회 변호사시험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 하였습니다.

- 총 3,644명이 원서 접수하였으나, 실제 3,255명이 응시하여 응시율은 89.3%를 기록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장애 응시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변호사시험에 최초로 중증 장애인 7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5명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하였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장애인용 컴퓨터, 책상, 보조인력 등 제공, 보조공학기기 사용 승인 등의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였습니다.

※ [별첨]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및 증빙서류’ 참조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022. 12. 27. 제24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00명 내외로 하고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기준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채점이 종료된 이후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합격인원을 결정하였고, 시험 실시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의결하지 아니하여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2. 7.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에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① 시험 실시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결정하고, ② 시험 실시 직후 이를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법무부는 2023. 4. 하순경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결정한 합격자 규모에 근거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향후에도 장애 응시자에게 공정한 시험 기회를 보장하고, 변호사시험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 장애 유형 및 정도 |                                                         | 시험시간 연장                                | 편의지원 내용                                                                                                                         | 증빙서류                                        |
|------------|---------------------------------------------------------|----------------------------------------|---------------------------------------------------------------------------------------------------------------------------------|---------------------------------------------|
| 시각<br>장애   | 공통                                                      | -                                      | ○ 확대 문제지<br>○ 답안작성용 컴퓨터(논술형 시험에 한함)<br>○ 필요시 별도 시험실 배정<br>○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br>1부<br>의사진단서 원본 1부        |
|            | 전맹인<br>(양안 교정시력 0.04 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하)                   | 선택형 2배<br>사례형 1.5배<br>기록형 2배           | ○ 점자문제지<br>○ 별도 법전(확대, 전자파일)(논술형 시험에 한함)<br>○ 음성지원 컴퓨터(음성형 문제)                                                                  |                                             |
|            | 약시자<br>(양안 교정시력 0.04 초과 ~ 0.3 미만)<br>※ 시야각도 장애는 포함되지 않음 | 선택형 1.5배<br>사례형 1.33배<br>기록형 1.5배      | ○ 별도 법전(확대)(논술형 시험에 한함)<br>○ 별도 답안지 제공 후 시험관리관이 OMR 카드에 대신 표기(이하 '답안작성 대행'이라 함, 선택형 시험에 한함)<br>※ 별도 답안지: 수기용 답안지 또는 확대 답안지 중 택1 |                                             |
| 뇌병변<br>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선택형 1.5배<br>사례형 1.33배<br>기록형 1.5배      | ○ 별도 법전(전자파일)(논술형 시험에 한함)<br>○ 답안작성 대행(선택형 시험에 한함)<br>○ 답안작성용 컴퓨터(논술형 시험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br>1부<br>의사진단서 원본 1부        |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 받은 사람                  | 기록형 1.5배                               | ○ 필요시 별도 시험실 배정                                                                                                                 |                                             |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없음                                     |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 지체<br>장애   | 상지<br>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선택형 1.5배<br>사례형 1.33배<br>기록형 1.5배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br>1부<br>의사진단서 원본 1부        |
|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 받은 사람 | 매 교시별 20분                                                                                                                       |                                             |
|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없음                                                                                                                              |                                             |
|            | 하지장애                                                    |                                        | 없음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br>1부<br>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
| 청각장애       |                                                         | 없음                                     | ○ 필요시 별도 시험실 배정<br>○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br>○ 휠체어 전용 책상 제공<br>○ 이동 편의를 위한 시험실 저층 배치 등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br>1부<br>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
| 청각장애       |                                                         | 없음                                     | ○ 필요시 별도 시험실 배정<br>○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br>○ 필요시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br>1부<br>의사진단서 원본 1부        |
| 기타         | 특수·중복 장애 일시적 신체 장애                                      | ○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검토하여 편의지원 내용 결정         |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            | 임신부                                                     | 없음                                     | ○ 별도 시험실 배정 ○ 간이침대<br>○ 화장실 사용 허용 ○ 분리형 책·걸상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
|            | 과민성대장(방광) 증후군                                           | 없음                                     | ○ 별도 시험실 배정<br>○ 화장실 사용 허용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 장애 등으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의지원 제공

※ 요청사항 및 진단서 등으로 편의지원 제공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위 편의지원 내용 외의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시험위원회의 심의 등에 따라 결정

※ 보조공학기기는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관리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확대 문제지: A3 규격, 글자 크기 15point